

住宅建設促進法中改正法律

대통령 박정희

1975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최규하
서리 김재규
국무위원 김재규
건설부장관

● 法律第2 853 號

住宅建設促進法중改正法律

住宅建設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3條 (住宅建設計劃樹立 등) ①建設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住宅에 관한 基本政策, 長期建設計劃 및 年次別 計劃을 樹立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建設部長官은 經濟企劃院長官 및 財務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②建設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年次別計劃에 따라 每年 國民住宅의 建設計劃 및 資金運用指針을 作成하여 經濟企劃院長官과 財務部長官의 協議를 거쳐 地方自治團體·大韓住宅公社 및 韓國住宅銀行에 示達하여야 한다.

③第2條 第3號의 事業主体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住宅建設計劃을 樹立하여 每年 4月 30日까지 建設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第2條 第3號의 事業主体는 住宅建設長 短期計劃을 効率的으로 樹立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每年 住宅에 관한 調査를 實施하여야 한다.

⑤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事業主体의 범위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한다.

第6條 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住宅銀行이 國民住宅債券을 發行하고자 할 때에는 第3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樹立된 長期建設計劃에 맞추어 發行額數를 정하되,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13條 第1項 중 “第3條”를 “第3條 第2項”으로 한다.

第17條의 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17條의 2 (土地收用法의 準用) ①事業主体 (第2條 第3號의 기타의 事業者를 제외한다)가 國民住宅을 建設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土地나 土地에 定着한 物件 및 그 土地나 物件에 관한 所有權 이외의 權利(이하 “土地등”이라 한다)를 收用·사용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土地 등을 收用·사용함에 있어서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土地收用法을 準用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土地收用法을 準用함에 있어서는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承認을 土地收用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 인정으로 본다. 다만, 裁決申請은 土地收用法 第17條 및 同法 第25條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事業計劃의 承認을 함에 있어서 承認 받은 住宅建設事業期間내에 할 수 있다.

第18條의 題目 “(事業計劃의 承認)”을 “(事業計劃의 承認 및 建築許可 등)”으로 하고, 同條 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하며, 同條 第4項 및 第5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①事業主体가 國民住宅을 建設하거나 國民住宅을 建設하기 위한 土地造成事業을 하고자 할 때

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事業計劃을 作成하여 建設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事業計劃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建設部長官이 정하는 경미한 事業計劃變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事業主体(國家 및 大韓住宅公社를 제외한다)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의 承認을 얻고자 할 때에는 管轄市長(서울特別市長·釜山市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郡守를 經由하여 이를 申請하여야 한다.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部長官이 事業計劃을 承認한 때에는 建築法 第5條 및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許可·協議 또는 承認과 都市計劃法 第4條·第24條 및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承認 또는 認可 및 同法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都市計劃의 決定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⑥ 建設部長官이 國家 또는 大韓住宅公社인 事業主体에 대하여 第1項의 承認을 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關係部·處·廳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第21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21條 (分讓價格 등의 承認) 事業主体는 國民住宅의 分讓價格 또는 家賃을 당해 國民住宅의 建設에 所要된 實費를 基準으로 정하여 建設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24條第2項중 “(서울特別市長·釜山市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削除한다.

第30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30條 (監督) ① 建設部長官은 事業主体가 이法 또는 이法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 경우에는 工事의 中止, 免許 또는 承認의 取消등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① 道知事 또는 市長·郡守는 事業主體가 이法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 경우에는 工事의 中止 등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第31條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建設部長官·道知事 또는 市長·郡守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法에 의한 免許 또는 承認을 받은 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公務員으로 하여금 事業場에 출입하여 필요한 檢査 및 質問을 하게 할 수 있다.

第38條第3號를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에 第4號 및 第5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3.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承認을 얻지 아니하거나 承認연은 價格을 초과하여 分讓 또는 賃貸한 者

4. 第30條 내지 第32條의 命令에 違反한 者

5. 第3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檢査 및 質問에 不応한 者

第6條第5項중 “第4項”을 “第1項 내지 第4項”으로 한다.

第7條第2項, 第16條第2項, 第17條第2項, 第18條第2項, 第19條第2項, 第31條第2項 및 第34條第2項중 “前項”을 각각 “第1項”으로 한다.

第17條第3項, 第18條第3項, 第19條第3項 및 第24條第3項중 “前項”을 각각 “第2項”으로 한다.

第17條第4項 및 第19條第4項중 “前項”을 각각 “第3項”으로 한다.

第13條第5項중 “前項”을 “第4項”으로 한다.

附 則

①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 (경과措置) 이 法 施行전에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計劃承認을 申請한 者에 대하여는 同條 第5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에너지 소비절약포어

에너지는 国力이다. 아껴써서 愛國하자.
기름으로 만든 전기. 한등껴써 애국하자.

쓰고나면 再生없다. 에너지를 節約하자.

에너지를 아껴써서 外화지출 막아내자.
너도나도 걸기운, 절약되고 건강준다.